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2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38조제2항)	3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 (안 제8조의2제1항, 제50조제2항 · 제4항 및 제50조의2)	12
3.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안 별표 2)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25.

다. 회 부 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 외에 새로운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제11호, 제50조제2항·제4항 및 별표 2 제72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3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 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3)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관련 시설의 확충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신종 감염병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분야와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⁴⁾

최근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9%, 71.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연도별 우리나라와 OECD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 비율 >

(단위: %)

내용		2010년	2015년	2020년
공공의료기관	우리나라	6.7	5.8	5.4
	OECD	52.3	53.5	52.9
공공병상	우리나라	13.0	10.5	9.7
	OECD	74.2	74.6	71.8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통계집(2017년, 2022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설을 포함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축할 경우 총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해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실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을 위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현황 >

(단위: 억 원)

선정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부처요구	조사결과 (완료연도)	B/C	AHP
2004	재활전문산재병원	588	통과 (2005)	1.08	0.683
2006	인천보훈병원	1,125	미통과 (2007)	0.25	0.235
2007	국방의료원 신축	5,423	미통과 (2007)	0.10	0.265
2010	경상대학교 창원분원 건립	3,085	통과 (2010)	1.07	0.538
2010	권역외상센터건립	6,161	미통과 (2011)	0.58	0.328
2011	군산전북대병원	2,636	통과 (2012)	1.10	0.603
2013	세종충남대병원	2,677	통과 (2014)	0.94	0.537
2013	산재모병원	4,269	미통과 (2018)	0.73	0.304
2018	국립소방병원	1,522	통과 (2019)	1.08	0.533
2019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5,948	통과 (2021)	0.96	0.56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소멸위기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한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제범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면제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둘째, 현행법에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⁵⁾

실례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 법령상 추진사업으로 5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바 있음.

<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

연 도	사업명	면제사유	비고
2009	국립마산병원 현대화사업	법령상 추진 사업	
2010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법령상 추진 사업	
2013	국립 중앙의료원 현대화	법령상 추진 사업	
2016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법령상 추진 사업	
2016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 중부, 영남, 호남 3개 권역	법령상 추진 사업	
2019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2021	대전의료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2021	서부산의료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6. (생 략)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생 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연 도	사업명	면제사유	비고
2021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 음영: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므로 재정 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소도시 지역 외에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보다는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공의료기관의 건립, 유지보수 및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⁶⁾ 및 공공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⁷⁾ 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23호, 2024. 7. 11)

7)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68호, 2024. 7. 18)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김선민의원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업
③ ~ ⑤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타당성 재조사 실시

(안 제8조의2제1항, 제50조제2항·제4항 및 제50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 타당성의 재조사 ① 타당성재조사 대상 기재부장관 협의를 요하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 중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 ② 타당성재조사 주체 - 기획재정부장관 <신 설>	○ 사업 타당성의 재조사 ① 타당성재조사 대상 (현행과 같음) ② 타당성재조사 주체 -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함)하여야 함.⁸⁾

8)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개정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타당성재조사와 별도로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주무부처가 이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부문에 대해서만 타당성재조사를 타기관이 실시하도록 할 경우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u>전문기관</u> 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 ----- <u>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u> ----- ----- ----- . 다만,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 8. (생략) ② ~ ⑤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다.	----- ----- ----- -----.

3.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설치 근거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금)

현행법 제5조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공공보건의료기금
재 원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 출연금 및 기부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용 도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총원 ◦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제공 ◦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원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이라 함)은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

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어려움 및 필수공공의료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법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¹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

10)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¹¹⁾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국민건강의 주요 위해요인으로서 판단되는 흡연을 감소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¹²⁾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원과 지출 사업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금의 주요 재원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¹³⁾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징수액은 약 2조원임. 이 중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¹⁴⁾인 약 1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입할 경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11)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12) “경제장관회의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14.9.11

13) 쉐든 20개비 기준 594원, 쉐든형 전자담배 20개비 기준 529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 국세로 징수

14)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우 동 기금 재원의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보건소 및 공공전문진료센터¹⁵⁾ 등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확충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경우, 신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함.

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금과 일반회계 비교>

구분	기금	일반회계
설치목적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운영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 조정 • 국회의심의 • 의결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의심의 • 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u>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u>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수입과 지출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계획변경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추경예산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구성

다만, 현재 기타 회계·기금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용도인 의료취약지 등
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사업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신설되는 경우 사업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회계·기금 간의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
임.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기금 관련 기타 회계·기금 사업 사례>

회계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및 의료취약지 지원 및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171억 5,4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노후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인건비 지원	1,939억 5,500만원
응급의료 기금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운영	100억 4,8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및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등	240억 2,1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신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한한 기금 신설은 과도한 칸막이 설치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저해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가 논의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공공보건의료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계류 현황>

구분 (의안번호)	김미애의원안 (제695호, 2024.6.20.)	박덕흠의원안 (제797호, 2024.6.21.)	김윤의원안 (제1623호, 2024.7.11.)	김선민의의원안 (제2229호, 2024.7.25.)
기금명	지역의료발전기금	지역의료발전기금	지역·필수의료기금	공공보건의료기금
기금 규정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기금 재원	◦ 동법 2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동법 제28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 그 밖에 수입금	◦ 정부·지자체 출연금 ◦ 정부·지자체 외 출연금 및 기부금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수익금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 기금운용 수익금 ◦ 그 밖에 수입금
기금 용도	◦ 지역 의료기관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등 ◦ 지역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보수 또는 수당의 지원	◦ 필수의료지역 책임 네트워크 진료 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 ◦ 필수의료취약지의 시설 및 인력 확충 ◦ 지역 의사 의무복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적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충원 ◦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제공 ◦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